●환경부령 제1095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 2024년 05월 31일

환경부장관 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1호라목4)를 5)로 하고, 같은 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)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(기상사업자로 한정한다)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가)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 - 나)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 ·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,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〈환경부 제공〉